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89호 2016. 3. 2.(수)

선	기관의 장
람	

【조 례】

【규 칙】

【훈 령】

제256호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1

【예 규】

【고 시】

제2016-2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9

제2016-23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11

제2016-25호 중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준공 고시 13

제2016-28호 의당복합농공단지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 고시(안)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4

【공 고】

제2016-305호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9

제2016-309호 공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37

회							
람							

발행 공주시 (편집 미디어담당관 ☎ 840-2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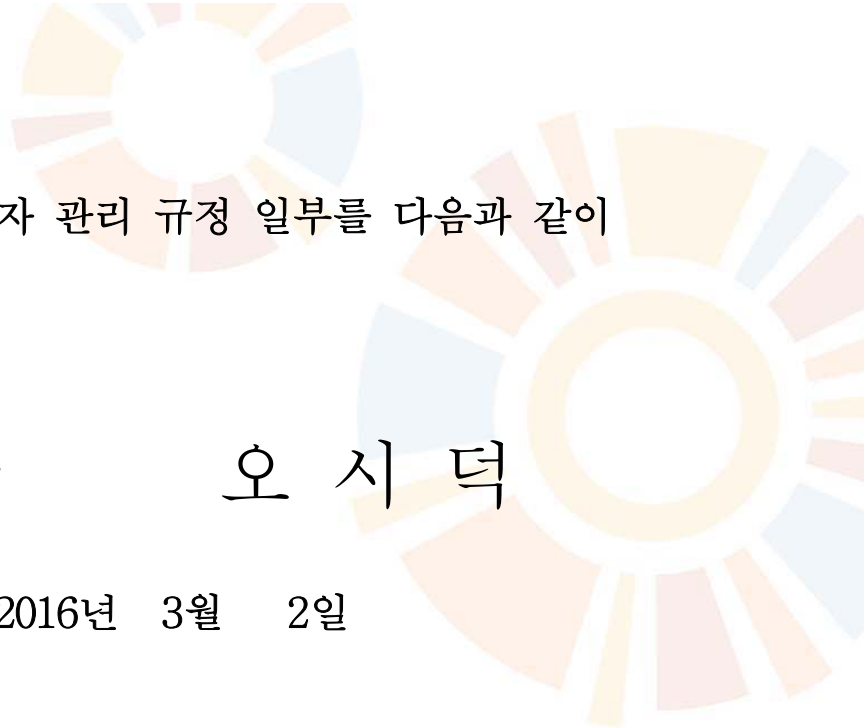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 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6년 3월 2일

공주시 훈령 제256호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2명” 을 “207명”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제3호.제4호.제9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각각 “생년월일” 로

한다.

별지 제5호·제6호·제8호 서식 중 “담당” 을 각각 “팀장” 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호주 및 관계” 를 “세대주 및 관계” 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표(제7조 관련)

1.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제외)

(단위: 명)

직종별 부서별	계	단 순 노 부										도로 보수원	환경 미화원	비 고
		소 계	시설 장비유 관리	현장 작업	현장 감독 감시	상하 수도 검침	진료 보조 원	의료 급여 관리사	직업 상담사	통 역	단순 조무 인부			
총 계	176	92	12	8	2	12	27	2	1	5	23	11	73	
소계(본청)	107	47	5	8	2	12	-	2	1	5	12	11	49	
시정 담당관	2	2								1	1			시장부속실 1, 통역1
기획 담당관	1	1									1			부시장부속실 1
인사 담당관	1	1									1			기록물관리 1
사회과	2	2						2						의료급여관리 2
시민봉사과	1	1									1			여권업무보조 1
회계과	2	2									2			청사환경정비 2
문화관광과	4	4								4				통역 4
문화재과	4	4	2								2			공산성관리 1, 고분군관리 1, 매표 및 안내 2
교육체육과	1	1									1			교육업무지원 1
기업경제과	1	1							1					직업상담사 1
건설과	11											11		도로보수원 11
교통과	5	5	1	2	2									가로등수리 2, 정차단속 2, 공공자전거운영업무보조 1
환경자원과	51	2									2		49	환경개선부담금 보조 1, 환경미화원 49, 재활용품수거운반 1
수도과	20	20	2	6		12								시설관리 2, 누수수리 4, 상하수도준설 2, 상하수도검침 11, 상하수도세입보조및요금상담 1
토지과	1	1									1			새주소사업보조 1
의회사무국	3	3									3			의원사무실 1, 의정부속실 1, 인터넷신문 등 편집 및 홍보 1
소계(직속기관)	35	35	4				27				4			
보건소	28	28					27				1			한방진료보조 6, 예방접종 2, 치위생사 2, 건강생활실천사업 1, 이동목욕사업 1, 금연상담지도 1, 물리치료 1, 임신부영양이관리보조 1, 방문민원안내 1, 통합건강증진사업 12
농업기술센터	7	7	4								3			농기계수리 4, 토양검정실 1, 가축질병진단실 1, 조직배양실 1

직종별 부서별	계	단 순 노 부										도로 보수원	환경 미화원	비 고
		소 계	시설 장비 유관리	현물· 장사· 작업	현장 단속· 감시	상하 수도 검침	진료 보조 원	의료 급여 관리 사	직업 상 담사	통 역	단 순 조 무 인 부			
소 계 (사업소)	7	7	3								4			
복지시설 사업소	6	6	3								3			복지프로그램운영보조, 구내식당 영양사 1, 구내식당조리보조 1, 운영관리 3
시도서관	1	1									1			도서관운영지원 1
소 계 (읍·면)	24												24	
유구읍	4												4	환경미화원 4
이인면	2												2	환경미화원 2
탄천면	2												2	환경미화원 2
계룡면	3												3	환경미화원 3
반포면	3												3	환경미화원 3
의당면	2												2	환경미화원 2
정안면	2												2	환경미화원 2
우성면	2												2	환경미화원 2
사곡면	2												2	환경미화원 2
신흥면	2												2	환경미화원 2

2. 청원경찰의 정수(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단위: 명)

부서별	계	경비 청원 경찰	단속감시 청원경찰						청원 산림 보호 직원
			소 계	지방2급 하천감시	공원 녹지 감시	주정차 일반 단속	과적 차량 단속	문화재 보호 감시	
총 계	31	13	16	9	1	2	2	2	2
소 계 (본청)	28	10	16	9	1	2	2	2	2
회계과	2	2							
문화재과	5	3	2					2	
건설과	2		2				2		
산림과	2								2
도시정책과	1		1		1				
교통과	2		2			2			
수도과	4	4							
안전관리과	9		9	9					
환경자원과	1	1							
소 계 (사업소)	3	3							
문화시설사업소	2	2							
복지시설사업소	1	1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제1항 관련)

정수책정요구서				
직 종				
근무내용				
채용필요성				
요구인원				
연간 사무량	사무명	사무처리 총소요일수	1일 평균 처리시간	처리기간 (연간근무일수)
보수지급기준 (단가, 수당 등)	구분	소요액	산출근거	
	보수			
	수당			
근무시간				
<p>「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책정을 요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부서장 ○○○ (인)</p> <p>인사담당관 귀하</p>				

[비고] 사무처리 총소요일수는 처리시간 ÷ 8근무시간 × 처리기간을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6조제2항 관련)

정수책정통보서	
직 종	
근무내용	
책정인원	
그 밖에 사항	
<p>「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책정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인사담당관 ○○○ (인)</p> <p>○○ 부서장 귀하</p>	

【별지 제3호 서식】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정 수 책 정 승 인 대 장

사용부서	직 종	인 원	월급여액 (일액/원)	근 무 내 용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대장

사용 부서	직종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증	학력	채용 일자	채용 기간	업무 내용	비고 (전화)

【별지 제5호 서식】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2호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카드

소 속		최초근무일		사 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세대주 및 관 계			
()			의 ()			
주 소			전 화	자택 :		
			특기		취미	
병 역 사 항	군 별	계 급	군 번	병 과	입 대 일	전 역 일
재산상황	주 택	백만원	그외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학 력	부 터	까 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자 격 면 허						
연월일	종 별		연월일	종 별		
경 력	근무부서	채용일	임금일당	상여금	담당업무	비 고
기타사항	채용해제일 :		(해제사유 :) / ※혈액형 : 형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2. 15.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추동2길 60-10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02.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공정부 주소업장제
1	충청남도 공주시 장구읍 추계리 497-6	충청남도 공주시 장구읍 추계2길 60-10	2016.02.15	신축	20100112	기물형태 부속이 된 마 돌이로 용취도 있고 해서 주동이라 불렀다 하며, 일련번호 부여원칙과 용취 불용 주동이라 부여	고사후 공문 발송 예정
2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745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탄천신안길 80-106	2016.02.15	누락	2013.02.23	탄천신안신안길 중간에 따른 도로명 부여	고사후 공문 발송 예정
3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 472-6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오두재길 4-5	2016.02.15	신축	20100112	지형이 까마귀 머리 모양이라 하여 생긴 지명 활용	고사후 공문 발송 예정
4	충청남도 공주시 괴룡면 봉영리 492-15	충청남도 공주시 괴룡면 중방길 11	2016.02.15	누락	20100112	해당 지명(마을 명칭)을 활용	고사후 공문 발송 예정
5	충청남도 공주시 장안면 하신리 379-4	충청남도 공주시 장안면 장화신길 20	2016.02.15	신축	20100112	상신과 하신을 관통하는 도로이며 상신의 상자와 하신의 하자를 활용하여 상하신길로 부여	고사후 공문 발송 예정
6	충청남도 공주시 장안면 장원리 123-4, 77-2	충청남도 공주시 장안면 동방이들길 23-13	2016.02.15	신축	20100112	동방이 있었다 하여 동방이들길로 부여	고사후 공문 발송 예정
7	충청남도 공주시 장안면 아불리 111-3	충청남도 공주시 장안면 아불음지들길 1	2016.02.15	신축	20100112	해당 지명(마을 명칭)과 행정구역 명칭 복합 명명	고사후 공문 발송 예정
8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평리 294-9, 294-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공수원로 3-59	2016.02.15	신축	20090825	공수원이라는 명칭 활용	고사후 공문 발송 예정
9	충청남도 공주시 신원면 화흥리 148-2	충청남도 공주시 신원면 평화길 389-8	2016.02.15	누락	20100112	평소리와 화흥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두 행정구역의 명칭을 활용하여 부여	고사후 공문 발송 예정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2. 15.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새재길 21-8 (봉정동)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02.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중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준공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거 중산천의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시행한 중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준공내용을 하천법 제27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일

공 주 시 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중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목적 :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홍수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중산천의 제방축조 및 보강, 호안시설 정비를 통한 재해 사전 예방.
 - 나. 개요 : 축제 및 호안공 3.3km(양안), 교량 3개소, 배수암거 4개소, 배수통관 10개소, 등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충남 공주시 금흥동 542번지 ~ 송선동 642-36번지간(중산천)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칭 : 공주시장
 -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5. 하천공사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가. 착수 : 2014. 01. 28
 - 나. 준공 : 2015. 12. 21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게재생략
(사유 : 편입된 토지는 매입하여 시유지화 하였음으로 게재생략)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게재생략
(열람장소 : 공주시 안전관리과)
8.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8조 및 제27조제5항에 의함.

의당복합농공단지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 고시(안)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공주시 준공 인가된 의당복합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당복합농공단지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공주시 경제과(041-840-829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6년 3월 2일

공 주 시 장

▣ 의당복합농공단지 지정

1. 농공단지의 명칭 : 의당복합농공단지
2.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 나. 면 적 : 147,475.8㎡
3. 농공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건설자재 생산기업인 한일시멘트(주)의 시멘트(레미콘, 레미탈)공장을 입지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및 신규 고용창출을 도모
4.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지정 : 한일시멘트(주) 대표 원인상
 - 변경 : 한일시멘트(주) 공주공장 대표 곽의영 외 2인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08년 ~ 2014년 9월 30일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6.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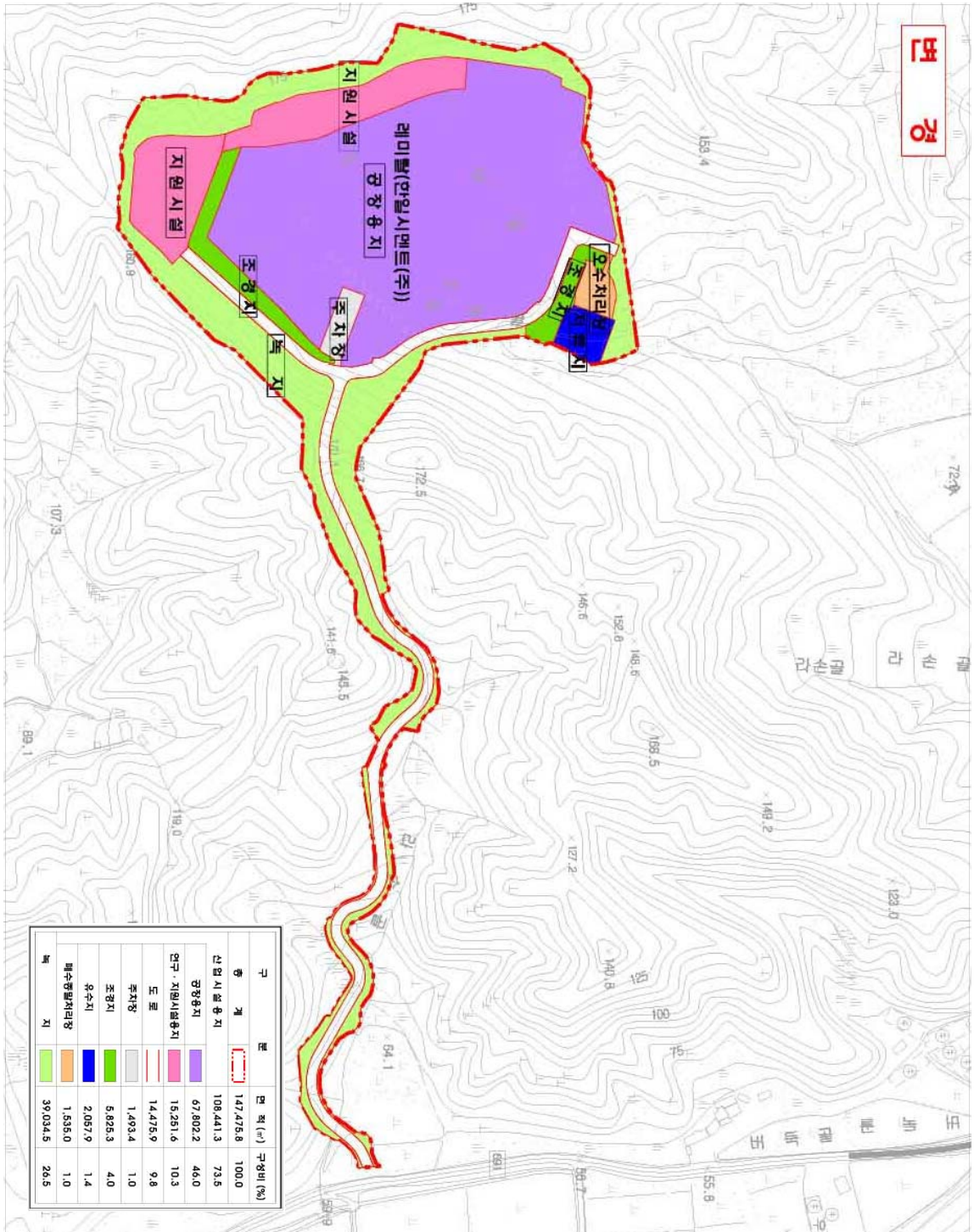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표 > : 변경없음

구분	면적 (㎡)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147,475.8	-	147,475.8	100.0
산업시설용지	108,441.3	-	108,441.3	73.5
녹지	39,034.5	-	39,034.5	26.5

< 세부개발계획(변경)표 >

구분	면적 (㎡)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147,475.8	-	147,475.8	100.0
산업시설용지	108,441.3	-	108,441.3	73.5
공장용지	67,802.2	-	67,802.2	46.0
연구·지원시설용지	15,251.6	-	15,251.6	10.3
도로	14,475.9	-	14,475.9	9.8
주차장	1,473.4	증) 20.0	1,493.4	1.0
조경지	5,845.3	감) 20.0	5,825.3	4.0
저류지	2,057.9	-	2,057.9	1.4
폐수처리장	1,535.0	-	1,535.0	1.0
녹지	39,034.5	-	39,034.5	26.5

< 토지이용계획(변경)도 >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구 분		노선수	연 장 (m)	면 적(m ²)	비 고	
합 계		2	1,362.3	14,475.9		
일 반 도 로	중로	소 계	-	-		
		3 류	-	-		
	소로	소 계	2	1,362.3	14,475.9	
		1 류	2	1,362.3	14,475.9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	구지도로	512.8	오페수 처리장	연구·지원 시설용지	단지내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2	10	구지도로	849.5	가산리 44-6번지	소로1-1	진입도로			
계						1,362.3						

2) 주차장계획(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⑤-1	⑤-1	주차장	의당면 가산리 산18-10임 일원	의당면 가산리 산18-10임 일원	510.3	1,493.4		
변경	⑤-2			의당면 가산리 산18-13임 일원		963.1			

3)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⑦	녹지	완충녹지	의당면 가산리 산18-10임 일원	39,034.5		

4)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④	유수지	저류시설	의당면 가산리 산18-13임 일원	2,057.9		

5) 환경기초시설계획(변경없음)

◦ 수질오염방지시설(오·폐수처리장)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③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장	의당면 가산리 산18-13임 일원	1,535.0		

8.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용수공급계획

총 용수량 (m ³ /일)	공업용수량 (m ³ /일)	생활용수량 (m ³ /일)	비 고
280	200	80	단지 내 심정 개발

나. 오·폐수처리계획

구 분	용수량 (m ³ /일)	계획일 오·폐수량 (m ³ /일)	비 고
생활계 오수	80	70.46	분뇨 + 잡배수
산업계 폐수	200	-	산업계폐수는 전량 재이용수로 사용되므로 폐수발생량은 없음
계	280	70.46	-

다. 폐기물처리시설계획

구 분	합계	폐기물 처리계획			
		소 각	매 립	재활용	위탁처리
총발생량	2.213	0.017	0.012	0.044	2.140
생활폐기물	0.073	0.017	0.012	0.044	-
사업장폐기물	2.140	-	-	-	2.140

라. 전력공급계획

구 분	부지면적 (㎡)	전력원단위 (KW/천㎡·월)	부하율 (%)	전력수요 (MWh/년)	비 고
전력수요	108,441.3	207.52	40	9,000	

마. 통신공급계획

구 분	부지면적 (㎡)	계획인구 (명)	산정원단위	소요대수 (대)	비고
통신수요	108,441.3	134	1회선/5인	27	

9.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게재 생략)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무상귀속 종류와 그 세부목록 - 해당사항 없음

▣ 의당복합농공단지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의당복합농공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 기정 : 한일시멘트(주) 대표 원인상
- 변경 : 한일시멘트(주) 공주공장 대표 곽의영 외 2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사업의 목적 : 농공단지 개발
- 사업의 개요
 - 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

4. 사업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2번지 일원

나. 면 적 : 147,475.8㎡

5. 사업의 개발기간(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8년 ~ 2014년 9월 30일

6.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실음 생략 (의당복합농공단지 지정(변경) 제9호, 10호와 동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8. 관계도서는 공주시청(경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고시합니다.

9. 행위의 제한

- 의당복합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불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7,475.8	-	147,475.8	100.0	
관리지역	147,475.8	-	147,475.8	100.0	
보전관리지역	-	-	-	-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147,475.8	-	147,475.8	100.0	
농림지역	-	-	-	100.0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	의당복합 농공단지	산업개발 진흥지구	의당면 가산리	147,475.8	2009. 2. 4	

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①	의당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147,475.8	-	147,475.8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	구지도로	512.8	오페수 처리장	연구·지원 시설용지	단지내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2	10	구지도로	849.5	가산리 44-6번지	소로1-1	진입도로			
계						1,362.3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⑤-1	⑤-1	주차장	의당면 가산리 산 18-10임 일원	의당면 가산리 산18-10임 일원	510.3	1,493.4		
변경	⑤-2		주차장	의당면 가산리 산 18-13임 일원		963.1			

■ 주차장(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기정	변경				
⑤-1, ⑤-2	⑤-1	주차장	• 주차장 위치 변경 및 면적 증가	•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개소를 1개소로 위치변경	

다. 공간시설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⑦	녹지	완충녹지	의당면 가산리 산8-10임 일원	39,034.5		

라. 방재시설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지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④	유수지	저류시설	의당면 가산리 산18-13임 일원	2,057.9		

마. 환경기초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지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③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장	의당면 가산리 산18-13임 일 원	1,535.0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가구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위 치	도면 번호	면적 (m ²)		가구 및 획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m ²)		
				기정	변경		
합 계		147,475.8	147,475.8	-	147,475.8	147,475.8	
충청남도 공주 시 의당면 가 산리 산18-10 번지 일원	①~⑧	147,475.8	147,475.8	①~②	83,053.8	83,053.8	산업시설 (공장 및 지원시설)
				③~⑧	25,387.5	25,387.5	공공시설용지 (도로, 주차장, 저류지, 조경지, 오수처리장)
				⑦	39,034.5	39,034.5	녹지용지

주 : 면적 변경은 없으나 부지경계 변경 및 위치변경

나.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공장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83,053.8		-		83,053.8		
②	②-1	83,053.8		의당면 가산리 산18-11번지 일원		7,290.9		연구· 지원시설
②	②-2			의당면 가산리 산18-9번지 일원		7,960.7		연구· 지원시설
①	①-1			의당면 가산리 60-1번지 일원	의당면 가산리 60-1번지 일원	56,710.6		67,802.2
①	①-2	의당면 가산리 60-3번지 일원	11,091.6					

■ 공공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5,387.5	25,387.5			25,387.5	25,387.5	
⑤	⑤-1	⑤-1			의당면 가 산리 번지 일원	의당면 가 산리 번지 일원	510.3	1,493.4	주차장
⑤	⑤-2				의당면 가 산리 번지 일원		963.1		
⑧	⑧-1	25,387.5	25,387.5		의당면 가산리 산18-11번지 일원		5,845.3	5,825.3	조경지
④	④-1				의당면 가산리 산18-13번지 일원		2,057.9		저류지
③	③-1				의당면 가산리 산18-13번지 일원		1,535.0		폐수종말처리장
⑥	⑥-1				의당면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14,475.9		도로

■ 녹지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합 계		39,034.5			39,034.5
⑦	⑦-1	39,034.5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39,034.5	완충녹지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공장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②	②-1 (연구·지원시설) (의당면 가산리 산18-11번지 일원)	용도	허용	•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높이 (층수)	20m 이하 (4층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치·형태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건축선		3m				
	②-2 (연구·지원시설) (의당면 가산리 산18-9번지 일원)	용도	허용	•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높이 (층수)	20m 이하 (4층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치·형태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건축선		3m					
①	①-1 공장용지) (의당면 가산리 60-1번지 일원)	용도	허용	•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높이 (층수)	20m 이하 (4층 이하)		
	용적률	150% 이하	(구조물높이 85m 이하)				
	배치·형태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건축선		3m					
①-2 (공장용지) (의당면 가산리 60-3번지 일원)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3m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②	②-1 (연구·지원시설) (의당면 가산리 산18-11번지 일원)	용도	허용	•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높이 (층수)	20m 이하 (4층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치·형태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건축선	3m				
	②-2 (연구·지원시설) (의당면 가산리 산18-9번지 일원)	용도	허용	•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높이 (층수)	20m 이하 (4층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치·형태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건축선	3m					
①	①-1 공장용지) (의당면 가산리 60-1번지 일원)	용도	허용	•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높이 (층수)	20m 이하 (4층 이하)	
		용적률	150% 이하		(구조물높이 85m 이하)	
		배치·형태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건축선	3m					

■ 공공시설용지(변경)

○ 기정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⑤	⑤-1 (주차장) (의당면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주차장 및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⑤-2 (주차장) (의당면 가산리 산18-13번지 일원)	건폐율	60% 이하	높이 (층수)	4층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치·형태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 원색사용가능하나, 전체면적 30%를 넘지 않도록 함			
건축선	3m					
④	④-1 (저류지) (의당면 가산리 산18-13번지 일원)	용도	허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저류시설(부대시설 포함)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④-1 (저류지) (의당면 가산리 산18-13번지 일원)	건폐율	60% 이하	높이 (층수)	4층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치·형태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건축선	3m					
③	③-1 (폐수종말처리장) (의당면 가산리 산18-13번지 일원)	용도	허용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부대시설 포함)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③-1 (폐수종말처리장) (의당면 가산리 산18-13번지 일원)	건폐율	60% 이하	높이 (층수)	4층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치·형태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건축선	3m					

○ 변경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⑤	⑤-1 (주차장) (의당면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주차장 및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높이 (층수)	4층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치·형태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 원색사용가능하나, 전체면적 30%를 넘지 않도록 함		
건축선		3m				
④	④-1 (저류지) (의당면 가산리 산18-13번지 일원)	용도	허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관한 규칙 제118조 저류시설(부대시설 포함)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높이 (층수)	4층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치·형태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건축선		3m				
③	③-1 (폐수종말처리장) (의당면 가산리 산18-13번지 일원)	용도	허용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부대시설 포함)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높이 (층수)	4층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치·형태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건축선		3m				

공주시 공고 제2016-305호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15. 11. 11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및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 (안 제7조)
- 나.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전면 개정 (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토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토지과

주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

전화: 041-840-8062 / FAX: 041-840-242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를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로, “법률」 제20조제1항”을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의견청취 등)”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다만, 법 제20조제1항 제1호, 제3호의 심의 안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제2호에서 같다)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 삭제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에서 이를 심의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 을 “(의견청취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능) <u>위원회는 「부동산가</u> <u>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u> <u>률」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u> <u>을 심의한다.</u></p> <p>제7조(의견청취 등) <u>위원장은 필</u> <u>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u> <u>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u> <u>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u> <u>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u> <u>수 있다.</u></p>	<p>제2조(기능) <u>위원회는 「부동산</u> <u>가격공시 -----</u> <u>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u> <u>조제1항 -----.</u></p> <p>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p> <p>①<u>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u> <u>"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u>에는 위원회의에서 제척(除斥)</u> <u>된다.</u></p> <p>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u> <u>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u> <u>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u> <u>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u> <u>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u> <u>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u> <u>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u> <u>의무 자인 경우. 다만, 법 제20</u> <u>조제1항 제1호, 제3호의 심의</u> <u>안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u> <u>니하다(이하 제2호에서 같다)</u></p> <p>2.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u> <u>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u> <u>우</u></p> <p>3. <u>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u> <u>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u></p>			

<신 설>

<신 설>

<신 설>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
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
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 삭제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
고, 위원회의에서 이를 심의한
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
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

제8조(위원의 해촉) 위촉 위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
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
득한 비밀사항을 누설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타지역 이주, 자격 상실 등으
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
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
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
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
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6.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삭 제>

공주시 공고 제 2016 - 309 호

「공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과도한 원고료 수령 및 원고료 우회 신고
 - 원고료에 대한 상한액 기준이 없는 점을 이유로 과도한 원고료 수령
 - 강의 요청기관이 대가를 총액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강의료 상한액 초과분을 원고료로 우회하여 신고
 - 동일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직무관련 외부강의를 수차례 실시하고, 매회 같은 내용의 원고료를 반복하여 수령
- 과도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수행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
- 국가·지자체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대가 기준 초과수령
- 외부강의 부적정 운영
 - 대가를 받고 실시한 외부 강의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요청자·요청사유·일시·대가 등의 신고항목 중 일부를 누락

- 외부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강의료 외에 여비를 지급받고도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중복하여 수령
-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 을 도입하지 않고, 임직원이 과도한 강의료 수령
- 근무시간 중에 직무와 관련한 전화자문 후 대가를 수령하거나, 관내에 위치한 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과도한 교통비 수령

2. 주요 내용

○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

구 분	시 장	4급 이상	5급 이하	비 고	
				현행	개선
1시간 (상한액)	400	230	120	원고료 미포함	<u>원고료 포함</u>
1시간 초과	300	120	100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위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으로 직무관련 강의·강연 형태의 외부활동에 적용

○ 외부강의·회의 등의 횟수·시간 제한

-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등(강의·강연·발표·토론·자문 등)에 대해 월 3회·6시간으로 제한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월 3회·6시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 금액 반환 의무화

- ‘외부강의 대가기준’ 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외부강의·회의 등의 관리체계 강화

-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속기관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외부강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감사담당관실(감사팀)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32552)

전 화 : 041-840-2086 / FAX : 041-840-230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공무원 행동 강령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공무원 행동 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주시 소속 공직자가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자는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반기별로 분석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외부강의 규정 위반자는 징계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항중 ‘받은’ 을 ‘받거나 제15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으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7조 제2항 관련)

<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

(단위: 천원/ 1시간)

구 분	시장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300	120	100	

-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 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 동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